

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국내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이하, 이조에서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규정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단서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규정 제8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제21조”는 “동규칙 제17조”로 본다.
4. 규정 제24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5. 규정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이하, 이호에서 “동표”라 한다)의 구분란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표의 구분란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 공무원 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

표의 구분란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국외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이하, 이조에서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규정 제8조제1항중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2. 규정 제9조제2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규정 제21조 및 제26조제4항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4. 규정 제24조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등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6. 5. 11.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4월 26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6년 5월 3일
  - 다. 상정일자 : 제38회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96.5.11.)상정, 질의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문엽승
  - 가. 제출이유
    -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 명의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가 가능토록하여 구청 민원실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함으로써 주민등록사무를 민원편의 위주로 개선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조례 내용중 일부 미비점 보완·정비
    - 구청장 명의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가 가능토록

조항을 신설하여 구청 민원실에서 주민등록의 열람 및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 실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중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명의로도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구청 민원부서에서도 주민등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동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 5. 토론요지: 없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 8. 기타사항: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4
----------	----

제출년월일: 1996.4.26.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 명의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가 가능토록하여 구청 민원실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함으로써 주민

- 등록사무를 민원편의 위주로 개선코자 함
- 2. 주요골자
  - 조례 내용중 일부 미비점 보완·정비(案, 제2조제1호)
  - 구청장 명의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가 가능토록 조항을 신설하여 구청 민원실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 실시(案 제2조제4호)
- 3. 개정 근거
  - 주민등록법(1993.12.27. 법률제4608호) 제2조제2항, 제18조
  - 주민등록법시행령(1994.10.6.) 제45조, 제45조의3
  - 지방자치법(1995.12.29. 법률제5069호) 제15조, 제95조제1항, 제2항
- 4. 조례(안): 별첨
- 5. 예산조치 필요성 여부: 예산조치 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주민등록법시행령”을 “주민등록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권한의 위임) (생략)	제2조(권한의 위임) (현행과 같음)
1. 법 제17조의8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자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1. .....주민등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18조, 영 제45조 및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